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송도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중, 민병주, 박승진,
박칠성, 봉양순, 서상열,
송재혁, 유정인, 이상욱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임규호, 정준호, 최기찬,
최재란, 한 신, 홍국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,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이동 편의 증진을 강화하여,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,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교통약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 관련 법적 근거를 법 및 시행규칙으로 확대 명시 (안제19조제1항)
 -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
- 나.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(안제19조제2항)
 -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‘성폭력 예방교육’을 추가하여,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강화

다.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포함 (안제19조제3항 신설)

-택시운수종사자도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, 택시 이용 시 교통약자에게도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**법 제13조**”를 “**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**”로, “**교통약자서비스**”를 “**교통약자서비스 등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**제1항**”을 “**제1항 및 제3항**”으로 한다.

5. 성폭력 예방교육

③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<u>법 제13조</u> 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 및 <u>교통약자서비스</u>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	제19조(교육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3조</u> 및 <u>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</u> --- ----- <u>교통약자서비스</u> 등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5. <u>성폭력 예방교육</u>
5.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신설>	③ 「 <u>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4호에 따른 <u>택시운수종사자</u> 는 <u>법 제13조</u> 및 <u>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</u> 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<u>교통약자서비스</u> 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	⑤ <u>제1항</u> 및 <u>제3항</u> ----- ----- -----

서 하도록 하며, 교육의 효과
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 별도의
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-----.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(교육)를 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교통실 택시정책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9조	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	2,003,787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병준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